

☞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

요금후납

() 납부고지서

가산세 산출근거

귀하는 () 제 조에 따라 아래 주된 납세자의 ()입니다.			
주된 납세자	성명 (상호) 주소 (사업장)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
구 분			
①			
②			
③			
④ 여기에 가산세			원을 더하고
⑤ 각종 공제세액 (법정공제,기납부세액)			원을 빼면
⑥ 납기 내 고지세액은			원이 됩니다.
위 국세는 () 귀속 ()로서 ()에 의하여 주된 납세에게 부과되었으나, () 현재 가산세(금) 포함 ()원이 납부되지 않아, ()인 귀하에게 미납금액의 ()인 () 원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음을 통지합니다.			
이 납부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☎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			
년 월 일			
세무서장 (인)			

주된 납세자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.			
가산세 구분	대상금액	세율	세액
계			
()납세의무 지정금액			
납부기한	년 월 일		
가산세 또는 가산금 등 차이로 귀하가 납부할 금액이 위 지정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니 아래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			

납부고지서 겸 영수증(납세자용)

납부일자별	납부할 금액	납부일자별	납부할 금액
위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(수납)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			
납부번호	분류기호	납부연월	결정구분
성명(상호)	수입징수관 계좌번호		
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회계연도 과세기간	일반 회계	기획재정부 소관
납부할 금액	위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		

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.

년 월 일

은 행
우체국 등

수납인

가산계좌

가산계좌

납부서 (수납기관용)

납부번호	분류기호	납부연월	결정구분	세목	발행번호
성명(상호)	수입징수관 계좌번호				
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회계연도 과세기간	일반 회계	기획재정부 소관	조 세	
납부할 금액	왼쪽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				

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은 행
우체국 등

수납인

안 내 말 씀

1. 납부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(수납)대리점인 은행,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2.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·ARS·ATM과 국세청홈택스(홈택스 앱 포함)(www.hometax.go.kr)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,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(☞ 아래 참조).
3. 가산세 구분란은 「국세기본법」에 따른 무신고가산세, 납부지연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,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.
4.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(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, 30일 내 처리)을 거쳐 심사청구(국세청, 90일 내 처리) 또는 심판청구(조세심판원, 90일 내 처리)를 하거나,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.
 - ※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세무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상담·불복·제보 > 불복청구 > 국선대리인 신청)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※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[납세자권익24 > 납세자권익보호 소개 > 납세자권리구제 제도 > 불복]를 참고하거나,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,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(5쪽에서 계속)

(5쪽)

5. 납부기한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안내
 -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: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가산금이 가산되고,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.75%(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.2%)의 가산금이 추가(최장 60개월까지)됩니다.
 -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: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,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.022%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(최장 5년간) 됩니다.
6. 제2차 납세의무자(납세보증인 포함)의 경우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,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「국세징수법」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.
7. 납부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8.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(6쪽)

◆ 전자납부 이용방법

- ◎ 인터넷뱅킹: [금융기관 홈페이지] 접속 ⇒ [인터넷뱅킹, 온라인서비스, 국세납부 등] 선택(납부가능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)
- ◎ ARS 납부: [거래은행의 ARS전화] 접속 ⇒ [국세납부 등] 선택 ⇒ 안내에 따라 납부
- ◎ ATM 납부: [거래은행의 ATM기] 이용 ⇒ [국세납부 등] 선택 ⇒ [납부번호입력] ⇒ [납부]
- ◎ 홈택스(홈택스 앱 포함)(www.hometax.go.kr)나 인터넷지로(www.giro.or.kr)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(납부가능시간 ⇒ 07:00~23:30)

국세납부 →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→ 공동인증서 확인 →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,
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→ 납부하기 →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→ 납부확인 →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

- ※ 신용카드 납부는 홈택스, 카드로택스(www.cardrotax.kr), 은행CD/ATM기,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,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. 수수료(신용카드 0.8%, 체크카드 0.5%)는 납세자 부담입니다.
- ※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.